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68127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피고B

변론 종결2019. 4. 5.

판결 선고2019.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76,045달러 및 위 금원 중 미화 847,127달러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인정사실

- 1) C회사(이하 'C 홍콩법인'이라 한다)는 2014. 8. 4. 원자력연료 설계 및 제조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천매암 제염제를 1톤당 미화 2,200달러(월 100톤 이하 공급시)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모두 300톤의 천매암 제염제, 대금 합계 66만 달러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C 홍콩법인은 위 대금에 관하여 2015. 3. 29. 미화 49,968달러, 2017. 12. 6. 미화 4,611달러를 결제하였을 뿐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2) 이 사건 제1계약 제22조 제1항은 '구매자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지급기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와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출된 이자(지연손해금)는 2018. 7. 31.을 기준으로 미화 81,089달러이다[원고는 C 홍콩법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일부 지급한 대금을 원금에 충당하였다].
- 3) D회사(이하 'D 일본법인'이라 한다)은 2015. 1. 5. 원고와 '일본 E 지구 제염을 위한 방사선 측정 및 분석 용역 서비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미화 335,000달러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용역수행을 마쳤음에도 피고는 2015. 9. 15. 미화 74,668달러, 2017. 12. 6. 미화 4,611달러, 2018. 1. 29. 미화 9,391달러, 2018. 3. 5. 미화 4,624달러) 만을 지급하였다.
- 4) 이 사건 제2계약 제8절 제6항은 피고가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연 6%)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출된 이자(지연손해금)은 2018. 7. 31. 기준으로 미화 47,829달러가 된다[원고는 D 일본법인이 제3)항과 같이 일부 지급한 대금을 원금에 충당하였다].
- 5)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홍콩법인이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하여 미지급한 대금(미화 605,421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2018. 7. 31. 기준 미화 81,089달러), D 일본법인이 이 사건 제2계약에 관하여 미지급한 대금(미화 241,706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2018. 7. 31. 기준 미화 47,829달러), 합계 미화 976,045달러 및 그 중 위 원금 합계 미화 847,127달러(=605,421달러 + 241,706달러)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제염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어기고 위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② 원고가 C 홍콩법인과 D 일본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도용하여 위 회사 및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연

판사김현준

판사박이랑

1) C 홍콩법인과 D 일본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8. 1. 29.과 2018. 3. 5. 원고에게 변제한 위 돈은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지연이자율이 높은) 이 사건 제2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